과천도시공사 광고물 등 관리지침

제정 2020.02.05. 지침 제2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설치·부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을 유지하고 이용객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용객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게시판과 기타 공작물로써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부서”라 함은 광고물의 게시·부착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광고물의 종류)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2.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3. 벽보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기타 시설물에 부착하는 광고물
4. 전단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5.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6. 아치광고물 :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창문이용 광고물 :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광고물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광고물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과천시민회관 건물 외벽 및 주변시설물
2. 과천시민회관 건물내 게시판
3.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물

②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 관리부서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광고물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바탕색 및 글씨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2.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벽보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정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내용)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사항
2. 과천시민회관내 안내간판, 표시등 등에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3.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영리 또는 이익을 담은 내용

4. 기타 공익성에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6조(게시시설 관리) ①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수리 및 검인업무는 경영혁신부에서 행한다.

② 시민회관 건물 외벽 및 현수막 게시대·지정게시판의 관리업무는 시설관리부에서 행한다.

③ 대·소극장 외벽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 신고수리 및 사용료징수 업무는 문화사업부에서 행한다.

④ 공원관리부 소관 관리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수리 및 검인, 관리업무 등은 공원관리부에서 행한다. 다만,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한다.

제7조(자체광고물 관리) ① 공사 자체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 실·부서에서 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광고문안 작성은 사장 결재를 득하여 제작한다.

제8조(준용) 광고물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table>
<tr><td colspan="3" rowspan="2">광고물 표시 신고서</td><td>담당자</td><td>팀 장</td><td>부 장</td><td>상임이사</td><td>사장</td></tr>
<tr><td></td><td></td><td>전결</td><td></td><td></td></tr>
<tr><td>광고물 등
종 류</td><td colspan="3"></td><td>수량</td><td colspan="3"></td></tr>
<tr><td>광고내용</td><td colspan="7"></td></tr>
<tr><td>표시기간</td><td colspan="7"></td></tr>
<tr><td>표시위치</td><td colspan="7">지정게시대</td></tr>
<tr><td>공고물 등
관 리 자</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 colspan="3"></td></tr>
<tr><td>의무사항</td><td colspan="7">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종료한 경우 1일 이내 제거하여야 합니다.</td></tr>
<tr><td>구비서류</td><td colspan="7">☐ 포스터 부.
☐ 현수막 매.
☐ 전단 샘플 각 1부.</td></tr>
<tr><td colspan="8"><u>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u>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광고물 표시 신청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u>게시물 표시 기한 종료 시 즉시 파기</u>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게시물 표시 및 관리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미동의함</td></tr>
<tr><td colspan="8">과천도시공사 광고물관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과천도시공사사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광고물 신고필인 (제4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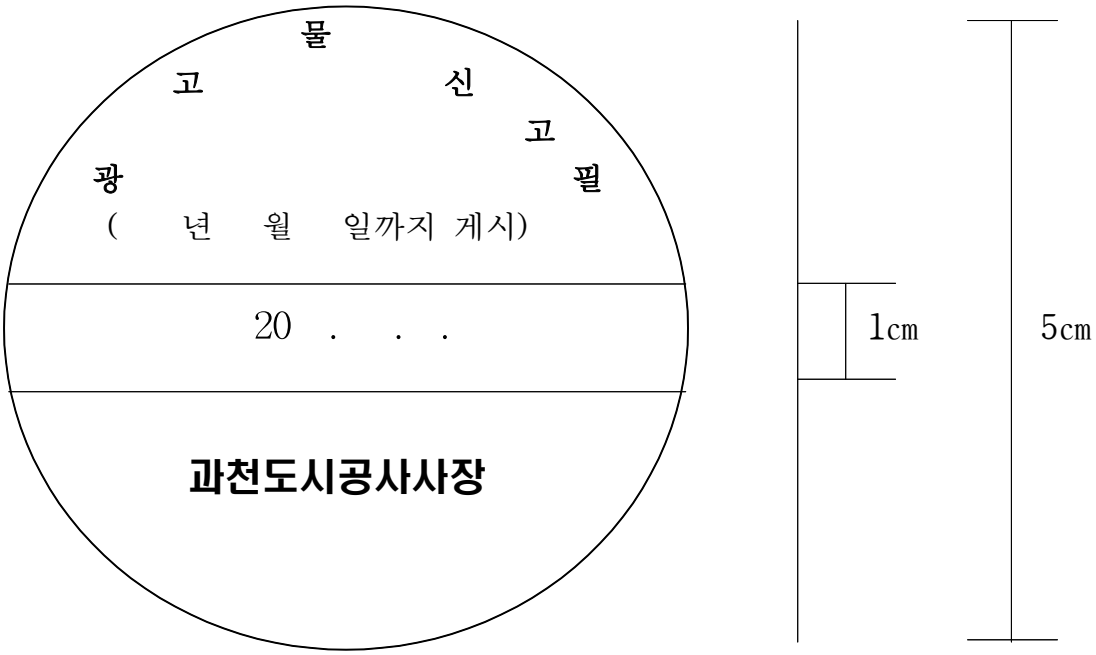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광고물 신고대장 (제4조제3항 관련)

연번	신고일자	광고물 종류	광고내용	수량	규 격	표시기간	표시위치	광고물 관리자	연락처	비고